보조금 사업

□ 연도별 예·결산액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25
	결산	결산	결산	결산	결산	예산
ㅇ보조금 사업	10,695	9,310	10,662	11,273	11,470	10,303

□ 사업목적

o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부처	사업명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방 송통 신위원회	1. 미디어다양성 증진		문화예술 (061)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3100)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3132)
	2.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문화 및 관광 (060)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3134)
	3.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활성화 지원				
	4. 지역밀착형 방송광고활성화 기반구축				
	5. 방송 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6. OTT산업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			방송통신 융합촉진 (1100)	방송산업 육성기반구축 (1140)
문화체육관광부	8. 청년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문화 미디어 산업육성 및 지원 (1 400)	방송영상 콘텐츠 및 광고활성화 (1432)
	9. 광고산업 실태조사				

□ 사업내용

구 분	내용
사업기간	′13 ~
총사업비	103억원
사업규모	-
지원조건	민간보조(정액지원), 지원형태(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제4호, 제6호, 제1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9호

제7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제12조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6.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법 제6조 제7항, 제35조의4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6조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 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③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 제69조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1조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 상 편 성하여야 한다.
- 제72조 ①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제73조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ㅇ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9조제2호, 제3호, 제6호
- 제18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9조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ㅇ 추진 경위

- 2012년 5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법인격이 변화
- 신규 출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는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수행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이를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방송광고판매대행대행등에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